



제320회 임시회

2013.05.08.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 전문위원 검토보고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3년 04월 26일
- 회부일자 : 2013년 05월 01일

### 3. 제안이유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4. 주요내용

#### □ 재산의 취득

(단위 : m<sup>2</sup>, 천원)

기관명	구분	사업명	수량	금액
행정과	토지	가칭)예성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5,338.00	2,200,000
	건물	가칭)예성유치원 원사 신축	1,782.00	3,247,000
	토지	가칭)오창2초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14,613.00	920,000
	건물	가칭)오창2초등학교 교사 신축	14,706.00	26,085,079
청주교육지원청	건물	청주중 다목적교실 필로티 및 태권도훈련장 개축	1,648.50	5,758,891
충주교육지원청	건물	국원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1,677.00	3,839,403

기관명	구분	사업명	수량	금액
제천교육지원청	토지	제천야영장(학현야영장) 인근 시유지 교환	5,055,017.00	7,764,123
	토지	장락초 운동장 및 다목적교실 건립 부지 교환	13,049.00	1,817,105
	토지	의림여중 점유 시유지 교환	4,499.00	1,192,235
	토지	가칭)의림유치원 예정지 연접 시유지 교환	363.00	178,005
	토지	봉양중 점유 시유지 교환	6,040.00	420,555
	토지	화당초 점유 시유지 교환	4,906.00	240,394
	토지	제천디지털전자고 점유 시유지 교환	2,562.00	166,530
	토지	왕미초 연접 시유지 교환	246.00	14,760
보은교육지원청	토지	보은교육지원청 맞춤형교육센터 부지 취득	3,012.00	620,000
	건물	보은교육지원청 맞춤형교육센터 신축	900.00	2,198,336
<b>합 계</b>		<b>(16건)</b>	<b>5,130,358.50</b>	<b>56,662,416</b>

### ① 가칭) 예성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취득

- 재산위치 : 충주시 안림동 499-1 외 1필지
- 매입부지 : 5,338m<sup>2</sup>
- 신축면적 : 1,782m<sup>2</sup> / 122명 수용
- 취득금액 : 5,447,000천원(토지 2,200,000천원, 건물 3,247,000천원)
- 취득사유 : 국원초 및 용산초병설유치원 통폐합에 따른 단설유치원 설립부지 및 원사 취득

### ② 가칭) 오창2초등학교 설립부지 및 교사 신축 취득

- 재산위치 : 오창읍 창리 산 28번지 일원
- 매입부지 : 14,613m<sup>2</sup>
- 신축면적 : 14,706m<sup>2</sup>
- 취득금액 : 27,005,079천원(토지 920,000천원, 건물 26,085,079천원)
- 사유 : 오창 제2산업단지내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초등학교 설립(신설)부지매입 및 교사 신축

### ③ 청주중학교 다목적교실, 필로티 및 태권도훈련장 개축

- 재산위치 : 청주시 상당구 영동 8번지
- 취득면적 : 건물 1,648.50m<sup>2</sup>

- 취득금액 : 5,758,891천원
- 사 유 : 노후 다목적교실 개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과 규격기준에 맞는 태권도경기장 개선으로 경기력 향상 도모

**4 국원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 재산위치 : 충주시 봉방동 72번지
- 취득면적 : 건물 1,677.00m<sup>2</sup>
- 취득금액 : 3,839,403천원
- 사 유 : 특성화고에서 인문계고교로 전환됨에 따라 학습환경 개선 및 원거리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5 제천시 사유지(20필지) 교환 취득**

- 교환재산 : 제천야양장 인근 부지 및 학교점유 사유지 20필지
- 교환취득 : 20필지 5,086,682.00m<sup>2</sup>
- 취득금액 : 11,793,707천원
- 교환사유 : 미활용 교육재산과 교육적 활용 가치가 있는 제천시 공유 재산과의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교환

※ 교환재산 취득 및 처분 내역

(단위 : m<sup>2</sup>, 천원)

구분	건 명	소재지	지 번	수 량	추정금액	비고
교환 취득	제천야영장 인근 사유지	청풍면 학현리	산18-89외1	5,055,017.00	7,764,123	도면5-1
	장락초 운동장 및 다목적교실 건립부지	제천시 장락동	산54외 1	13,049.00	1,817,105	도면5-2
	의림여중 점유 사유지	제천시 하소동	47-1외 2	4,499.00	1,192,235	도면5-3
	가칭의림유치원 예정지 연결 사유지	제천시 하소동	165-2외 1	363.00	178,005	도면5-4
	봉양중 점유 사유지	봉양읍 주포리	260-80외 7	6,040.00	420,555	도면5-5
	화당초 점유 사유지	백운면 화당리	85-3	4,906.00	240,394	도면5-6
	제천디지털전자고 점유 사유지	봉양읍 팔송리	364-1	2,562.00	166,530	도면5-7
	왕미초 연결 사유지	봉양읍 미당리	765-4	246.00	14,760	도면5-8
	<b>소 계</b>			<b>20필지</b>	<b>5,086,682.00</b>	<b>11,793,707</b>
교환 처분	구)동명초 부지 및 건물	제천시 명동	68외 4	17,233.00	18,956,300	도면8
			건물 8동	6,419.24	1,390,960	
	<b>소 계</b>			<b>23,652.24</b>	<b>20,347,260</b>	
<b>차 액</b>					<b>8,553,553</b>	

**⑥ 보은교육지원청 맞춤형교육센터 신축**

- 재산위치 :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26-1번지의 3필지
- 매입부지 : 3,012㎡
- 신축면적 : 900㎡
- 취득금액 : 2,818,336천원(토지 620,000천원, 건물 2,198,336천원)
- 사     유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Wee센터(진단평가실, 상담실, 진로  
              직업실, 공용공간 등)의 부족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 재산의 처분**

(단위 : ㎡, 천원)

재 산 의 표 시				처분금액 (천원)	처 분 시 기	처 분 사 유	매 도 요청자	비 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					
성남초 동신폐교	토지	충주시 목벌동	14,098.00	543,044	상반기	충주교육지원청사 건립 자체 재원 마련	공개 입찰	도면7
	건물	447-10 외1필지	789.49	156,956				
구)동명초 부지 및 건물처분 (교환)	토지	제천시 명동	17,233.00	18,956,300	상반기	미활용 교육재산과 교육적 활용가치가 있는 제천시 공유재산과 교환	제천시	도면8
	건물	68외 4필지	6,419.24	1,390,960				
합    계 (4건)			38,539.73	21,047,260				

**① 성남초등학교 동신폐교 처분**

- 폐교일자 : 1993. 3. 1.
- 재산위치 : 충주시 목벌동 447-10번지
- 재산현황
  - 토지 : 14,098㎡
  - 건물 : 본관교사 외 4동 / 789.49㎡
- 추정금액 : 700,000천원
- 현 용도 :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당뇨병동으로 대부

## ② 구)동명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교환 처분

- 이전일자 : 2013. 3. 1.
- 재산위치 : 제천시 명동 68번지
- 처분면적 : 부지 17,233.00㎡ 건물 6,419.24㎡
- 처분금액 : 20,347,260천원(토지 18,956,300천원, 건물 1,390,960천원)
- 사    유 : 동명초 이전에 따른 미활용 교육재산과 교육적 활용가치가 있는 제천시 공유재산(토지 20필지)과 교환

## 5. 검토의견

본 관리계획안은 단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신설과 일부 학교의 특수목적실 증축, 미활용 폐교 재산과 학교인접 사유지와의 교환취득, 특수교육지원센터 확충을 위한 것으로,

○ 재산의 취득 중,

① 가칭) 예성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취득은 2012년 11월 30일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제4차 정례회에서 “예성초와 중앙초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부지는 지리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부결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국원초와 용산초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지리적 문제를 완화<sup>1)</sup>하였으며, 단설유치원은 누리과정 확대 등 유아교육 여건 변화에 따른 공교육 역할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5,447,000천원으로 독립원사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생애 초기 단계인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공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가 인정되므로 타당 하다고 판단됨.

② 가칭) 오창2초등학교 설립부지 및 교사 신축 취득은 오창 제2산업단지 내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가칭 오창2 초등학교 신설을 위하여 27,005,079천원으로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특이 사항 없음.

③ 청주중학교 다목적교실, 필로티 및 태권도훈련장 개축은 1975년 증축된 청주중학교 다목적교실은 건축된지 38년이 경과되어 재난위험시설심의위

1) 충주시 안림동 499-1번지(예성유치원 설립부지)와의 거리. 예성초병설유(2.5km), 중앙초병설유(3.2km), 국원초병설유(1.8km), 용산초병설유(1.5km)

원회 심의결과 개축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 적정성 판정을 받은 바 있음.

5,758,891천원으로 노후된 기존 다목적교실을 개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국제 규격을 갖춘 태권도 경기장 설치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며, 학교 행사 시 주차장 부족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 발생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 의견임.

④ **국원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은 2013년 특성화고에서 인문계고로 전환되어 3,839,403천원으로 기숙사를 증축하여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여 학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적정 의견임.

⑤ **제천시 시유지(20필지) 교환 취득**은 제천디지털전자고, 의림여중, 화당초, 왕미초, 봉양중의 학교부지에 포함된 시유지 및 공립단설유치원(의림유치원) 예정지에 연접한 시유지를 교환·취득하여, 건물 증축 등 교육적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제천학생야영장 인근의 시유지를 취득하여 수련활동에 필요한 영조물 등을 설치하여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는 등 교육기관(학교)에 필요한 시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타당 의견임.

⑥ **보은교육지원청 맞춤형교육센터 신축**은 지역교육청 기구 설치기준 개정에 따른 조직 정비(2과 1센터)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신축 부지 확보가 필요하며, 청사 2층에 위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체장애 학생의 이용에 불편하고, 활용 공간이 특히 부족하여 시설확충이 시급히 요구되는 등으로 적정 의견임

○ 재산의 처분 중,

① **성남초등학교 동신폐교 처분**은 충주교육지원청사 건립 자체 재원 마련을 위하여 매각하려는 것으로, 폐교 재산 관리에 따른 행정력을 경감하고 지역 숙원 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 의견임

② **구)동명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교환 처분**은, 제천시와의 교환 협의로 동 부지에 제천교육문화센터가 건립될 예정으로 단위 학교와 지역교육청

의 각종 행사시 공동 이용할 수 있고, 도심 중심에 있는 학교부지를 시민들이 활용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재 활용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적정 의견임.

## 관 계 법 령 발 취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전문개정 2009.4.24]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